

전쟁없는세상·평화박물관 공동주관

2012 병역거부 자료展

74년



전쟁없는세상·평화박물관 공동주관

2012 병역거부 자료展
74년



CONTENTS

04	Intro
06	최초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일제징병제
08	한 가족에게 지워진 28년, 고난의 세월 - 옥지준 가족사건
10	남에서도 북에서도 총을 들지 않았다 - 한국전쟁 시기의 병역거부
12	온 나라를 군대처럼 - 병영국가화
14	'항명'으로 죄명만 바뀌었을 뿐 - 항명으로 병역거부 시작
16	출소하던날 다시 교도소로 - 반복처벌
18	죽어도 총을 안잡은 젊은이들 - 병역거부자 사망사건
20	알려지지 않았던 다른 종교인들의 병역거부
22	군사정권의 방패막이 될 수 없다는 양심선언 - 박석진
2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결성 - 병역거부 사회이슈로 등장
26	새로운 병역거부자들의 등장 - 반전평화주의 병역거부자들
28	708호 이등병의 편지 - 이등병 강철민, 파병반대 병역거부
30	진압의 도구에서 양심의 주체로 - 촛불의경 이길준
32	뜨거운 여론은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고 - 여론의 흐름
34	74년, 세월의 무게 - 병역거부 연대기
36	평화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운동
40	한국이 유엔에서 받은 권고들
44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병역거부권 - 유엔의 기준
46	Outro

2012

병역거부

자료전

74년



74년째 반복되고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처벌이 기록된 이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는 74년이 되었고, 지금까지 1만 7천여 명이 수감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오랜 역사에 비해 많은 변화가 압축적으로 일어난 시기였지만, 여전히 병역거부를 이유로 800여명이 감옥에 있는 지금의 현실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병역거부 자료展, 74년〉은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고난 받은 사람들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모진 처벌과 편견으로 인한 고통의 역사와 함께 우리가 만들어온 저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병역거부의 역사를 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시가 평화와 인권을 향한 변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초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일제징병제



출전하는 학도병

일제는 1938년 2월 22일 '육군특별지원병령'을 발표하여 조선인이 일본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아직 전반적인 징병제가 실시된 것은 아니었다.

이후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병력자원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자 일제는 1942년 5월 8일 각의의 결정을 통해 1944년부터 조선에 징병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일제가 지원병제도를 도입한 것은 병력자원의 부족을 메우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조선청년들을 '황군'에 복무케 함으로 황국의식을 주입하려는 것이 주된 의도였다. 그 가운데 특히 1939년 6월 일제가 조선의 여호와와의 증인 신도 38명을 체포했다. 이 사건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최초의 병역거부 기록이다.



일제의 징병홍보사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제는 1944년부터 조선에 징병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징병을 홍보하는 행진

한 가족에게 지워진 28년, 고난의 세월

옥지준 가족사건

[illegible]

조선 총독부 고등법원 검찰국 사상부가 발행한 사상회보 제24호에 실린 등대사 사건 관련 내용. 조선중대사상사건 경과표에 등대사 사건을 게재하여 체포자 명단, 범죄 사실 및 심문 조서 등을 실었다.

일제치하 당시 치안유지법위반 및 불경죄로 구속 수감된 여호와의 증인 수행자들 중에 옥지준 일가가 있다. 옥지준 일가는 1939년 병역거부로 촉발된 등대사에 대한 일제 검거 당시 투옥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그 자손들은 동일한 이유로 계속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리하여 옥지준 일가의 총 투옥기간은 28년이나 된다.

조선 총독부 고등법원 검찰국 사상부에서 발행한 사상회보에는 등대사 사건이 실려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성지역에서 총 31명의 여호와의 증인이 검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등대사 사건은 이후 독립운동의 한 부분으로 평가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의 예심종결결정문이 독립운동사 자료집에 포함되어 있다. 일제시대에 수감된 여호와의 증인은 총 38명이었는데, 36명은 한국에서 2명은 일본에서 투옥되었다. 그 중 5명은 옥사했다. 한 가족의 역사가 일제 시대에는 독립운동으로, 건국 후에는 반국가 범죄로 평가받는 모순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姓名	王兆俊	工种	木工	年龄	31	性别	男
籍贯	湖北	文化程度	初中	工龄	10	政治面貌	团员
住址	孝感市	健康状况	良好	是否受过奖励	否	是否受过处分	否
主要经历	1978年参加工作，在孝感市木材厂当木工，1980年调入本厂当木工。						
主要成绩	1981年被评为先进工作者，1982年被评为先进工作者。						
主要缺点	无						
主要特长	木工						
主要爱好	看书、听音乐						
主要经历	1978年参加工作，在孝感市木材厂当木工，1980年调入本厂当木工。						
主要成绩	1981年被评为先进工作者，1982年被评为先进工作者。						
主要缺点	无						
主要特长	木工						
主要爱好	看书、听音乐						

치안유지법위반 및 불경죄로 구속수감된 옥지준
일가의 신상기록카드



남에서도 북에서도 총을 들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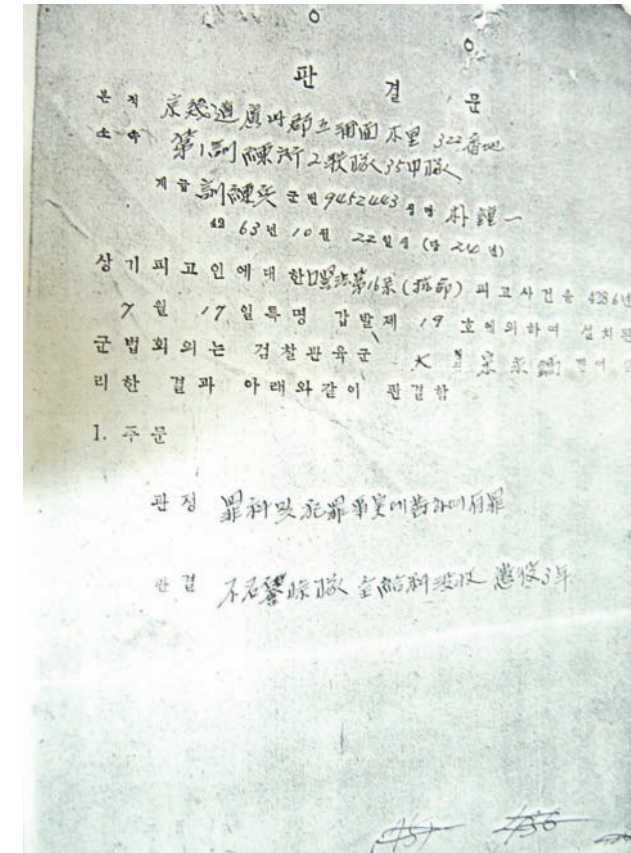
한국전쟁 시기의 병역거부



박종일 사진



노병일은 1950년 한국전쟁 중 인민군에 붙잡혀 총살위험을 받았다. 다행히도 군인들은 자신의 신념을 피력한 노병일에게 공포 사격을 가해 기절만 시켰을 뿐 목숨은 살려주었다.



박종일 사건 판결문. 1953년 한국전쟁 중 국군에 의해 징집된 박종일은 병역을 거부하여 3년 형을 선고받았다.

병역거부자들은 한국전쟁 당시 남북한 양쪽 모두에서 병역을 거부하였다.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하여 남북한 군인들에 의해 붙잡혀 군복무를 강요당했지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

전쟁과 살상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이들의 행동은 시대적 상황이나 특정 국가의 이념을 넘어서는 병역거부의 보편성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온 나라를 군대처럼 병영국가화



학교 교련시간에 군사훈련을 받는 모습들. 학생인지 군인인지 전혀 분간할 수 없다.

12

1961년 5.16 쿠데타로 군복을 양복으로 갈아입은 박정희의 1인 독재 시대가 시작된다.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심했던 군부는 경제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일상적으로 국가폭력을 행사하였다.

'국가'라는 이름아래 절대복종을, '안보'라는 이름 아래 군사주의를 강요하던 이 시대에 군대와 전쟁을 부정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았고, 거리에서는 장발단속을 실시했다. 군대는 물론 일상 모든 곳에서 전면적인 군사주의가 실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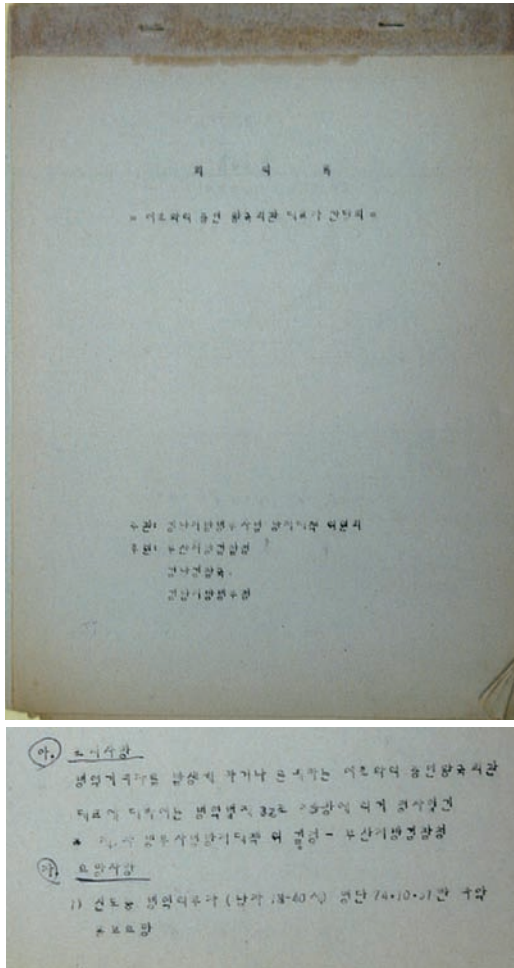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은 징병제가 시작된 일제시대부터 늘 존재했다. 국가는 이들을 병역기피자라 불렀다. 군부는 병역기피자들을 근절시킨다는 이유로 1973년부터 '병무행정 쇄신지침'을 내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극심한 탄압을 자행하기 시작했다.

13



‘항명’으로 죄명만 바뀌었을 뿐

항명으로 병역거부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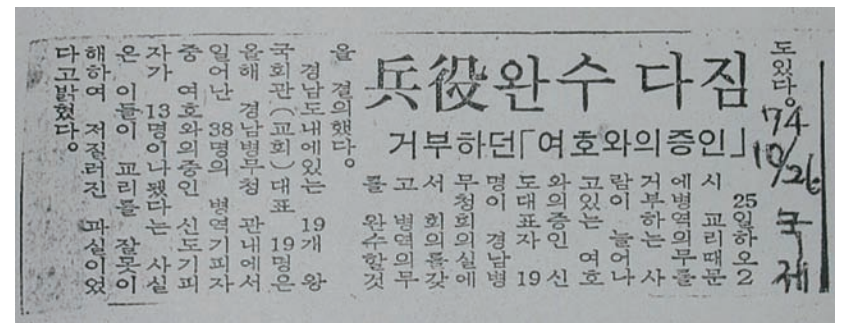


병무청 보고서

1974년 박정희 정권은 군 입영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을 강제입영시켰다. 이때부터 여호와의 증인들도 강제로 끌려간 뒤 군대 안에서 집총을 거부하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처벌의 근거가 병역법 위반이었으나, 이 시기부터 항명으로 바뀌고 처벌이 극단적으로 강화되었다.

각 지역 병무청은 여호와의 증인 대표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신도들에게 입영을 독려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관련 자료들과 간담회 결과를 종합하여 여호와의 증인들이 입영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박정희 대통령 앞으로 제출하였다.

1975년 3월 12일자 부산일보를 보면, 병무청 직원들이 여호와의 증인 집회장소를 급습해서 신도 55명을 강제연행한 후, 입영시킨 기사가 실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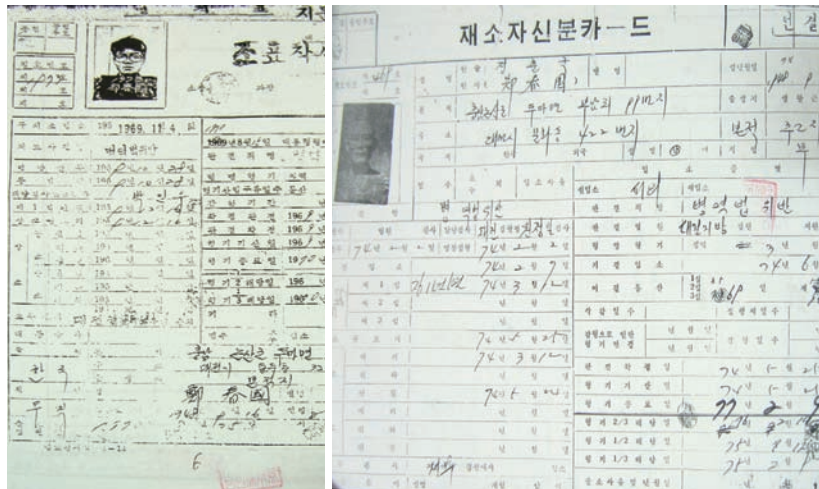
1974년 10월 26일 국제신문에 게재된 기사. 병무청이 여호와의증인 대표자들을 면담해서 신도들에게 군 입대를 종용하도록 요구한 내용이다.



출소하던날 다시 교도소로 반복처벌

1974년부터 병역거부자에 대한 중복처벌이 다양한 형태로 자행되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병역거부자를 교도소 앞에서 바로 연행한 후 영장도 없이 다시 군부대로 강제 입영시킨 사례,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에게 군교도소 내에서 재차 군사 훈련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다시 형량을 추가한 사례, 집행유예를 선고한 뒤 다시 병역을 거부하여 재판을 받게 될 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복역 기간을 늘리는 사례(이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형량까지 더해져 수감기간이 길어짐), 이미 집총을 거부한 자에게 다음날 재차 집총을 명하고 이를 거부한 병역거부자에게는 경합범이라 하여 1.5배의 형량을 선고하는 사례 등, 상식적인 법리상에 어긋나는 극단적인 국가폭력이 비일비재하였다.

수형자 중 최장기 수감자인 정춘국은 총 3차례에 걸쳐 7년 10개월을 복역하였다. 충남대 의예과 재학 중이던 정춘국은 1969년 병역거부로 10개월을 복역한 후, 1974년 병무비리 일소시기에 다시 징집되었다. 1년 6월을 선고받은 정춘국은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항소하였으나 오히려 3년으로 형이 늘었다. 형을 마치고 출소하던 날, 정춘국은 마중나온 어머니의 손조차 잡아보지 못하고 다시 불법 연행되어 헌병대에 넘겨졌다. 당시 군형법상 최고형이 2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춘국은 동일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4년 형을 선고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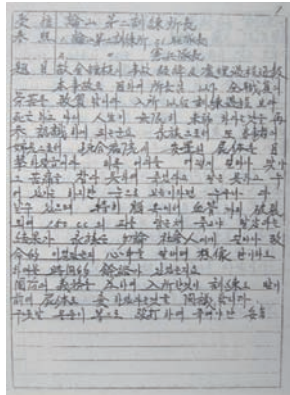
정춘국의 수형자 신분장



정춘국이 출소하는 날, 교도소 앞에서 다시 연행되는 정춘국과 그 모습을 눈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의 어머니



죽어도 총을 안 잡은 젊은이들 병역거부자 사망사건



김종식의 유가족이 훈련소장과 현병 대장 앞으로 보낸 사건 경위에 대한 질의서

사망진단서 (병역거부자)	
1. 병 소 호	제 3221호, 종가, 종가, 종가
2. 성 명	이준길
3. 생년월일	1976. 12. 25
4. 직 계	제 3221호, 종가, 종가, 종가
5. 병 소 호	제 3221호, 종가, 종가, 종가
6. 병역거부사유	1976. 12. 25
7. 사망원인	1976. 12. 25
8. 사망장소	제 3221호, 종가, 종가, 종가
9. 사망시간	1976. 12. 25
10. 사망원인	1976. 12. 25
11. 사망장소	제 3221호, 종가, 종가, 종가
12. 사망시간	1976. 12. 25

사망진단서 (병역거부자)	
1. 사망원인	1976. 12. 25
2. 사망장소	제 3221호, 종가, 종가, 종가
3. 사망시간	1976. 12. 25
4. 사망원인	1976. 12. 25
5. 사망장소	제 3221호, 종가, 종가, 종가
6. 사망시간	1976. 12. 25
7. 사망원인	1976. 12. 25
8. 사망장소	제 3221호, 종가, 종가, 종가
9. 사망시간	1976. 12. 25
10. 사망원인	1976. 12. 25
11. 사망장소	제 3221호, 종가, 종가, 종가
12. 사망시간	1976. 12. 25

이준길의 사망진단서



이준길 구타장면



이준길은 사단 영창에서 현병의 각목구타로 쓰러져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비장파열로 사망하였다. 이준길의 유족은 당시의 억압적인 분위기로 인해 군에 책임을 묻지도 못하였고, 군으로부터 받은 위로금이라고는 부대장이 보내온 일 만원의 조의금이 전부였다.



조의금



김종식은 논산훈련소에서 집총을 거부하였고 현병의 구타로 사망하였다. 유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당시 군 부연대장은 "비록 김종식은 죽었지만 그 신앙심으로 오히려 이겼다. 우리가 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책임을 시인하였다.

이들의 억울한 죽음이 국가폭력 때문이라고 인정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2008년 대통령직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당시 병역거부자 5인이 국가의 가혹행위 때문에 죽었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결정 이후에도 국가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재판의 1심에서는 국가의 배상 청구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군 당국이 가혹행위를 하고도 진실을 감추려 했기 때문에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10년 대법원은 국가 상고를 기각하며 국가배상책임을 확정하였다.



알려지지 않았던 다른 종교인들의 병역거부



김홍술 목사님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종교인들도 병역거부를 했다.

기독교 신앙에 깊은 영감을 받고 군 입대를 미루던 김홍술은 1978년 훈련소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심한 구타만 당할 뿐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휴가를 나와 중대장에게 편지를 쓰고 복귀를 거부하다가 영창에 끌려갔고 재판에서 3년 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를 했다. 현재는 부산에서 목사로 활동하며 노숙자들을 돌보고 있다.



효림스님



그 외에도 군대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혼자 조용히 병역을 거부하고 수감생활을 하는 경우가 꾸준히 존재해왔다. 무조건적인 징집과 강요되는 군 복무가 자신의 신앙적인 양심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병역거부의 흐름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었다.



군사정권의 방패막이 될 수 없다는 양심선언

박석진



당시 정부는 '범죄와의전쟁' 선포이후 공격적인 시위진압을 펼쳤고, 시위대를 발로 짓밟거나 쇠파이프나 각목으로 구타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심하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고, 이에 저항하는 시위도 격렬해졌다.

현역으로 입대한 사람들 가운데서 대간첩작전을 명목으로 무작위로 차출되는 전경과, 자원 입대지만 사실상 군복무를 하는 의경은 모두 군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주로 수행했던 업무는 시위 진압이었다.

1990년에 대학에 입학한 박석진은 그해 6월에 육군으로 입대했는데 전투경찰로 차출되어 시위진압을 전담하는 부대에 배치되었다. 당시는 노태우 정권이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시위진압을 하는 '백골단'을 만든 때였다. 1991년 3월부터 명지대학교에서는 등록금 문제로 시위가 치열했는데, 4월에는 시위대가 교문 밖으로 진출을 시도했고 이때 백골단이 달려들어 엄청난 폭력을 가했다. 그 과정에서 명지대 1학년생 강경대가 죽었다. 전경의 손에 죽은 강경대를 보고, 8일 후인 5월 4일 박석진은 더 이상의 복무를 거부하며 전투경찰의 해체를 요구하는 양심선언을 했다.



강경대의 죽음을 보고 양심선언을 결심한 박석진이 강경대영결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한겨레신문 1993. 5. 26. 기사



50여명에 달하는 양심선언 전경. 군인들은 수배생활과 농성을 하며 본인들의 주장을 이어갔다.

박석진이 양심선언을 할 때까지 군대관련 문제로 양심선언을 한 사병만 50여명에 달했다고 한다. 박석진은 군대문제로 양심선언한 사람들과 함께 전투경찰 해체와 군대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하며 수배생활을 이어갔고, 1993년 '군의 민주화와 자주화', '전투경찰대 해체' 등의 주장을 내걸고 농성을 하다가 연행되어 수감되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결성

병역거부, 사회이슈로 등장



병역거부연대회의 결성 기자회견



대체복무 입법촉구 기자회견



대체복무 촉구 서명운동

2001년 병역거부 문제가 널리 알려지는 데는 인권, 평화단체들의 역할이 컸다. 평화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36개 시민단체는 2002년 2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를 정식으로 발족했다. 이후 연대회의는 법률지원 및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병역거부자 및 병역거부를 고민하고 있는 젊은이들에 대한 상담활동,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의 의의를 알리기 위한 각종 간담회, 토론회, 기고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반세기 넘게 알려지지 않았던 병역거부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사회적 대안으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려는 노력도 진행되었다. 앞서 대체복무제를 시행한 해외 사례를 연구하였으며, 최근 대체복무를 도입한 대만 현지 조사를 거쳐 대체복무제도가 한국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제도임을 알려내고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 노력의 결실로 17, 18대 국회에서는 병역법 개정 법률안이 상정되기도 하였다.



평화재건이란 명목으로 한국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에 파병되었고 이를 계기로 반전운동, 파병반대 운동이 확산되었다. 병역거부자들도 각종 집회, 농성, 단식, 문화제, 이라크반전평화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는데, 특히 파병반대를 이유로 현역 군인 강철민 이병이 휴가 중 복귀를 거부하면서 병역거부의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였다. 당시 평화주의 병역거부자들은 진정한 평화재건을 원한다면 파병부대를 철수하고 민간평화봉사단을 파견해야 하며 자신들의 기꺼이 그 대열에 동참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들. 병역거부자들의 상황을 알리고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과 함께 우리 사회의 군사주의 문제를 드러내는 활동도 전개했다.



새로운 병역거부자들의 등장

반전평화주의 병역거부자들



28

2001년 말 불교신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오태양의 병역거부 선언 이후 여호와의 증인 외에도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 여러 종파에서 병역거부자가 등장했다. 또, 반전평화주의, 생태주의, 파병반대, 성소수자 정체성 등 다양한 이유와 신념을 가진 비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등장하였고, 병역거부 문제가 특정 종교를 넘어서는 보편적 인권과 평화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학생, 현직 교사, 영화 감독, 평화인권 활동가 그리고 현역 군인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위치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행동들이 작지만 커다란 울림을 지니고 퍼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실천을 계기로 병역거부는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직접행동'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의미를 던져주었다.



"저는 보이는 길 밖에도 세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을, 옳다고 여기는 것을 실천하는 행동이기에, 자신의 양심에 따른 행동이기에, 또한 진정한 평화를 위한 행동이며, 다양성과 개성과 상상력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라고 생각하기에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힘들면 잠시 쉬었다 가더라도 천천히 한걸음씩 이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 2005. 4. 4. 병역거부자 조정의민 소견서 중에서



29



708호 이등병의 편지

이등병 강철민, 파병반대 병역거부



청와대까지 평화행진을 하던 중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강철민은 자진출두하였다



강철민 병역거부선언 기자회견

이등병 강철민은 백일 휴가 마지막날 “파병계획이 철회되지 않으면 군대에 복귀하지 않겠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기독교회관에서 농성을 시작한다. 군대에 가기 전에도 학생회 활동 등을 한 강철민은 한국군의 파병에 직면하여, 파병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때 마침 이라크전쟁을 반대하며 병역을 거부한 염창근의 소식을 듣고 이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사람들은 전쟁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한국 사회에 본격적인 반전운동이 등장했으며 모든 인류와 함께 국경을 넘어 행동했다. 이라크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갔고, 강철민도 그 사람들 중 하나였다. 그는 "파병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며, 군인으로서 최초로 파병반대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파병반대의 여론이 거센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찬반 논란이 일었다. 강철민은 병역거부를 선언한 2003년 11월 21일 기독교회관 708호에서 평화적으로 농성을 시작하였고, 11월 28일 농성을 정리하였다. 매일 촛불 집회를 비롯해 작은 문화제가 열렸고 지지자들이 방문하면서 음식을 들고 오기도 했다. 농성장은 민주주의, 평화주의 원칙에 따라 모두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고 참여하면서 시종일관 진지함과 즐거움을 잃지 않았다. 강철민은 청와대까지 평화행진을 하던 중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자진출두하였다. 이후 강철민은 군사법정에서 실형 2년,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육군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마산교도소로 이감되었으며 2005년 2월 28일 3.1절 특사로 가석방 출소했다.

강철민 사례는 병역거부의 의미를 확장시켜 병역거부가 전쟁에 저항하는 직접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현역군인 신분으로 파병반대를 이유로 병역거부를 결심하면서 전쟁과 군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사회에 던져주었다.



진압의 도구에서 양심의 주체로

촛불의경 이길준

2008년 5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된 촛불문화제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부터 교육 문제,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반대 및 정권퇴진 등 다양한 목소리를 아올렸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촛불집회를 무리하게 진압했고, 촛불을 든 시민들과 이들을 진압하는 전의경들의 대치국면이 이어졌다.

7월 27일(일) 저녁 7시, 신월동성당에서 <진압의 도구에서 양심의 주체로 - 촛불진압 현역의경의 인간선언>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2008년 2월, 의경에 입대한 이길준 이경은 촛불집회 진압작전에 투입되면서 "인간성이 하얗게 타오르는" 극심한 양심의 고통을 느꼈고, 병역거부를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양심선언을 발표한 후 전의경제 폐지를 위한 농성을 시작했다.

기자회견 소식을 접하고 이길준 이경의 양심선언에 공감한 수많은 시민들이 이길준 이경의 결심을 지지하고 공권력으로부터 그를 지키기 위해 신월동성당으로 모여들었다. 시민들은 농성기간동안 매일 밤 8시 반부터 11시까지 신월동성당 마당에서 이길준을 응원하기 위한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농성소식이 퍼지면서 후원의 손길이 이어졌다. 이길준 이경의 양심선언을 지지하는 메시지와 함께 라면, 빵, 물, 모기향, 방석 등 후원물품들이 속속 도착했다. 어떤 시민은 밥차를 끌고 와 농성 참여자들에게 차와 음식을 제공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지원과 연대가 이어진 신월당 성당 농성장을 '젓과 꿀이 흐르는 농성장'이라고 빗댄 만큼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적인 지지가 이어졌다.

5일간의 농성 끝에 이길준은 "현행법을 어기었을지언정 인간의 도리는 어기지 않았다"며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이후 최종적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후 2009년 겨울에 출소했다.



신월동 성당에서 열린 이길준 양심선언 기자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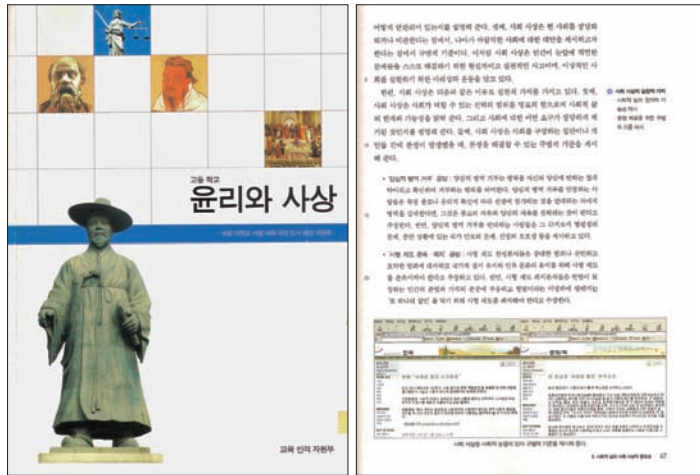
수많은 사람들의 지원과 연대가 넘쳐났던 농성장



농성마무리 및 자진출두 기자회견



뜨거운 여론은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고 여론의 흐름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실린 병역거부에 대한 내용

군사문화에 질게 물들어있던 사회인만큼 병역거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또한 여느 사건보다 민감하게 나타났다. 가열찬던 민주화 운동 가운데서도 불가침의 영역으로 인식됐던 병역제도, 지난 수십년간 유지되었던 편견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지만, 묵묵히 감옥으로 향했던 병역거부자들이 견뎌낸 고통의 시간들, 공개적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한 병역거부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노력은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을 만들어냈다.



병역거부와 관련된 다양한 서적들



한겨레21 특집기사

정부에서 대체복무제 허용 입장을 발표했던 적이 있을만큼 병역거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많이 바뀌었다. 병역거부는 특정 종교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이며 평화를 위한 행동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군대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처벌보다는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도 계속 진행 중이다. 또한 병역거부는 군대의 본질과 군사주의의 폐해를 드러내며 군대와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렸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74년, 세월의 무게

병역거부 연대기

1939년 6월 일제, 병역거부를 이유로 38명 체포
 1953년 한국전쟁 중 병역거부자에 실행 3년 선고
 1961년 9월 병역거부자를 병역기피자와 구분, 8월 선고
 1974년 강제 입영 조치 이후 항명죄로 2년 이상 선고
 1994년 7월 항명죄 최고형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 병역거부자에게 여러차례 징역을 명하고 이를 거부할 때마다 항명을 한 것으로 간주,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불법적인 처벌에 일부 판사들이 문제를 표명하자 균형법 자체를 개정하여 형량을 3년으로 상향조치함.
 2001년 2월 <한겨레21>의 기사가 지난 60여년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병역거부 문제를 사회에 알림.
 2001년 12월 오태양 병역거부
 2002년 1월 서울남부지원 위헌제청결정. 박시환 판사의 이런 결정 이후 이 취지에 동의하여 불구속기소나 보석석방, 재판연기 등이 많았다.
 2002년 2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결성
 2002년 3월 58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처음으로 문제제기
 2003년 11월 파병반대 강철민 병역거부 선언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 무죄 선고. 이정렬 판사의 무죄선고는 양심에 따른 행위가 처벌 대상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였고 이후 진지한 고민들이 촉발되었음.
 2004년 7월 대법원 유죄 선고.
 2004년 8월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비록 합헌이었지만 대체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결정이었음.
 2004년 병역법개정안 17대 국회 상정. 9월에는 임종인 의원이, 11월에는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현역복무기간의 1.5배의 대체복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음.

2005년 12월 국가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권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과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함.
 2006년 11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최종 견해에서 병역거부권 인정 권고.
 2006년 12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최명진 윤여범의 개인진정에 대해 한국정부 규약위반 확인 및 배상 결정
 2007년 9월 국방부, 대체복무허용방안 추진계획 발표.
 2007년 10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무죄 선고
 2008년 1월 국가인권위, 헌법재판소에 예비군 거부자 처벌금지 및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 의견서 제출
 2008년 5월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정례검토(UPR)에서 병역거부권 권고
 2008년 7월 촛불집회 진압거부 이길준 병역거부 선언
 2008년 10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병역거부자 죽음에 국가 가혹행위 인정
 2008년 12월 국방부, 여론조사를 근거로 대체복무 시기상조 결정
 2009년 계속되는 병역법 88조 위헌제청. 7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11월 전주지법, 12월 수원지법 등
 2010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오태양 등 11명의 개인진정에 대해 한국정부 규약위반 및 배상 결정
 2010년 12월 대법원, 병역거부자 군의문사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 확정
 2011년 3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병역거부자 100명의 개인진정에 대해 한국정부 규약위반 확인, 전과 말소, 배상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
 2011년 8월 헌법재판소 또다시 합헌 결정
 2011년 병역법개정안 18대 국회 상정. 7월 김부겸 의원이, 9월에는 이정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논의없이 임기가 종료되며 폐기됨.



평화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운동

평화운동방 소개

38

병역거부는 전쟁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평화주의 '신념'이자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서 전쟁에 저항하는 '행위'이다. 이는 전쟁과 같은 사회의 부정이나 권력도 시민들의 협조나 동의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사람들이 이러한 협조나 동의를 거부할 때, 현존하는 부정의와 나쁜 권력은 무너지거나 개선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병역거부 운동은 대체복무제 도입운동으로 수렴되거나 등치될 수 없고 군사주의에 대한 저항,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한 반전평화운동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39





한국이 유엔에서 받은 권고들

유엔에서는 이미 1980년대에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형벌적이 아닌 대체복무제 도입을 각 국가에 권고하였다. 한국은 유엔인권위원회의 이사국으로서 위의 결의안에 동참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권고를 이행하지는 않고 있다. 병역거부연대회의는 2002년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를 시작으로 회의가 열릴 때마다 관련 리포트와 서면, 구두진술을 해오고 있으며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개인진정제도를 이용하여 한국의 병역거부 상황을 유엔에 제출하였고, 권고를 반복해서 받아내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한국정부가 받은 유엔 권고들

2006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대한민국 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최종견해(CCPR/C/KOR/CO/3/CRP.1) 중

17. 위원회는 (a) 2003년 병역법 개정으로 현역 복무 거부로 인한 처벌이 최대 3년 징역형을 받고 있고, 그들이 재소집될 수 있고 새로운 처벌을 받게 되는 횟수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제한이 전혀 없으며; (b) 병역의무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고용에서 배제되며; (c) 유죄를 선고받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전과자로 낙인됨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들에 대해 우려한다. (제18조)

당사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병역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을 인정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규약 제18조에 일치하는 입법을 제정할 것을 장려한다. 이 점에서, 위원회는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22의 11항에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The State party should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recognize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ors to be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It is encouraged to bring legislation into line with Article 18 of the Covenant. In this regard, the Committee draws the attention of the State party to its General Comment 22 para.11 on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2011년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개인진정 결정문
(CCPR/C/98/D/1642-1741/2007) 중

7.2 위원회는, 강제군복무에 대한 대체복무가 당사국에 부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 청원인들이 군복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 그들에 대한 범죄기소와 투옥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따른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청원인들의 주장을 주목한다. 위원회는 본건에서, 당사국이 위원회의 이전 청원들에 대한 응답으로, 제기하였던 주장들, 특히 국가 안보,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의 형평성, 대체복무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부재에 관한 주장들을 되풀이했음을 주목한다. 위원회는 이전의 결정에서 이러한 주장들을 이미 심리하였고, 따라서 이전의 입장을 바꿀 어떠한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9. 동 규약 제2조 제3(a)항에 따라, 당사국은 청원인들에게 유효한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 구제조치에는 그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충분한 배상을 할 의무가 포함된다. 당사국은 향후 동 규약에 대한 유사한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9.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paragraph 3 (a), of the Covenant, the State party is under an obligation to provide the authors with an effective remedy, including expunging their criminal records and providing them with adequate compensation. The State party is under an obligation to avoid similar violations of the Covenant in the future, which includes the adoption of legislation measures guaranteeing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58차 유엔 인권위원회 한국참가단은 종교와 신념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Amor씨와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병역거부권 유엔의 기준



유엔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비록 주요한 국제 인권조약에 병역거부권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유엔은 병역거부권을 여러 인권규약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1989년에 채택한 결의 59호를 통해 병역거부권이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라는 점을 천명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의 결의들에서 이 점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또한 1993년에 채택한 일반논평을 통해 병역거부권의 법적 기초를 확정하였다.

국제법에 따르면 병역거부자들에게는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동일노동에 대해 동등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징벌적이지 않은 기간 동안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권리, 민간성격의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보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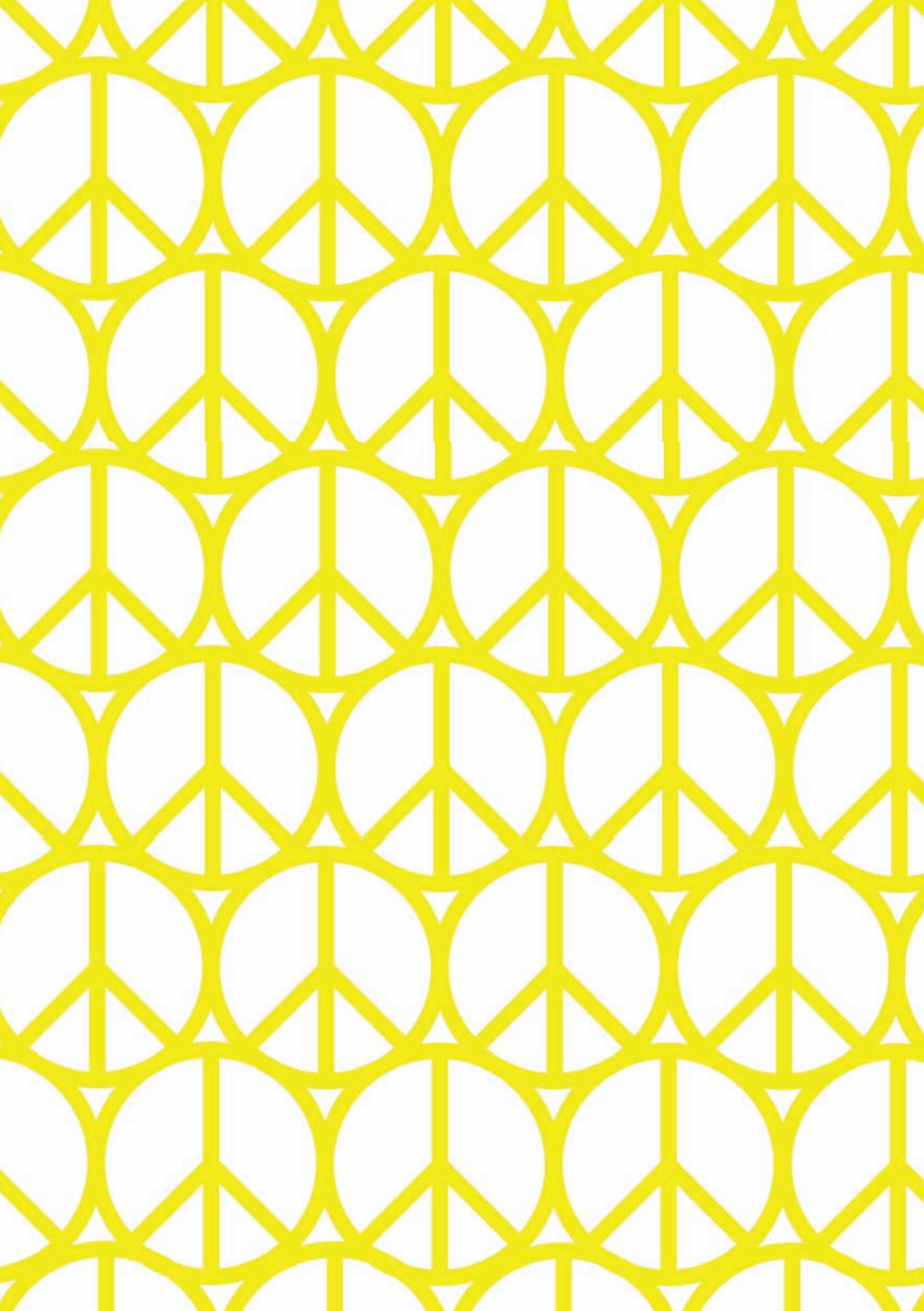
이러한 각종 국제법들, 병역거부자들의 권리에 대한 국가별 관행이 주기적으로 검토된다

유엔에는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불공정한 처우와 병역거부권의 사회적 인정여부를 감시하는 기구 및 절차들이 있다. 한국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로부터 받은 3차례의 개인진정 결정도 이러한 기구 및 절차들 중 개별적 인권침해 사례들이 적용 가능한 절차를 활용한 것이다. 더 나아가 유엔은 국가별 입법 및 실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이에 대응하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종교 혹은 신앙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매년 대체복무의 기회를 박탈당한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병역거부자들이 겪고 있는 개별적 인권침해 사례들에 주목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이와 관련된 국가별 인권 현황을 질의하고 있다. 인권이사회 또한 병역거부권의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를 정기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최근의 어느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직접 살인형을 집행할 명분은 없다는 것,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 아들의 형과 동생과 다시 그 아들이 자신의 믿는 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징역 1년 6월의 형을 사는 사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견해들이 다수의견이 되는 대법원을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으면서, 떠납니다.

— 2012. 7. 10. 전수안 대법관 퇴임사 중



전쟁없는세상·평화박물관 공동 주관

2012 병역거부 자료展 74년

일시 2012. 8. 7~24 (매주 월요일 휴관)

오전 11:00~오후 7:00 (토, 일요일은 5시 까지)

장소 평화박물관 스페이스 99